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정 의원)

의안 번호	236
----------	-----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5일

발 의 자 심현정 의원

찬 성 자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의원

## 1. 제안이유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영유아·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안 제10조의3제1항)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안 제10조의3제2항)
- 확장형 주차구획 설치(안 제10조의3제3항)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위치(안 제10조의3제4항)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별표 5)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 2. 5. ~ 2024. 2. 25.(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4. 1. 29.~ 2023. 2. 5. 의견 없음.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

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이 경우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  
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  
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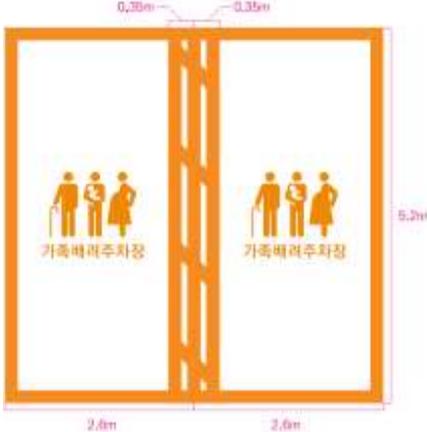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이 경우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p> <p>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li> <li>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li> <li>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li> </ol> <p>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p>

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제10조의3 관련)	
<p>일반형</p>  <p>출입통로</p>	<p>확장형(1면)</p>  <p>출입통로</p>
<p>확장형(2면)</p>  <p>출입통로</p>	
<p>- 비 고 -</p> <p>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p> <p>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p> <p>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p>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9.>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2. 6., 2021. 8. 27.>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 제1항및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2. 6., 2016. 4. 12., 2020. 6. 25.>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①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

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심현정의원
연락처	(033) 330 -2500